##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18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수진・추미애

박 정・김준혁・이광희

이병진 • 전종덕 • 권칠승

오세희 • 홍기원 • 박해철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

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,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,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.

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·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및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김 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·보급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김의 품질향상) ① 국가와	제12조(김의 품질향상) ①
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	
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	
추진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및
	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
	여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
	<u>개발·보급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